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홍국표 의원입니다.
- 제331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이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실 것 입니다. 서울시 역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

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예우를 포함한 지원 조항이 아닙니다.

- 한편,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예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 제4항을 개정하여,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예우를 갖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부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